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2026 알기 쉬운 주거복지서비스



군 산 시

목 차

I. 군산시(주택행정과)

1. 주거급여 지원	2
2.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6
3. 청년월세 지원사업	8
4. 희망루아파트 입주 지원	10
5.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12
6.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	13
7.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15
8. 저소득층 이사비 지원사업	17
9. 주거취약계층 거주자 이사비지원사업	18
10. 농촌주택개량사업	20
11. 재난대비 긴급주거시설 운영	22
12.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23
13.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24
14. 빈집정비사업	25
15.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26
16.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7
17.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8
18.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사업	29
19.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30

목 차

II. 군산시(타부서)

20.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32
21.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33
22.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34
23.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35
23. 취약계층 LED보급사업(저소득층)	36
25. 노인맞춤형 주거관리서비스	37
26.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	38
27.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서비스	39
28.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40
29. 군산 STAY 취·창업자 주거지원사업	42

I. 군산시(주택행정과)

주거급여 지원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료 지원 및 자가주택 수선유지를 지원하여 주거안정 도모

1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인정액	1,230,834	2,015,660	2,572,337	3,117,474	3,627,225	4,106,857

2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3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읍면동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읍면동 비치)
- 신분증, 통장사본
-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 등) 사본
- 기타 소득, 재산 증빙자료 등

4 | 지원내용

□ 전·월세 임차가구

- 지원내용 : 전·월세 임차비용 지원(매월 정기지원)
-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겐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

< 임차비용 기준임대료 >

(단위 : 원)

가구규모 지원액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원액	212,000	238,000	283,000	329,000	340,000	402,000

*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보증금, 월세비용 등에 의하여 차등지원 (최저 1만원 ~ 가구원수 최고금액)

□ 자가(自家)가구

- 지원내용 :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의 경·중·대보수를 기준으로 지원
- 지원범위

구분	경 보 수	중 보 수	대 보 수
지원액 (주기)	590만원 (3년)	1,095만원 (5년)	1,601만원 (7년)
보수 범위	마감재 (도배, 장판 등)	기능 및 설비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구조 및 거주공간 (지붕, 기둥, 욕실, 주방공사 등)
차등 지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100% 지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90% 지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초과 ~ 48%이하인 경우		80% 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산비용을 10% 가산		

* 장애인 : 주거약자 편의시설 비용으로 380만원 한도 추가 지원 가능

* 고령자 : 주거약자 편의시설 비용으로 50만원 한도 추가 지원 가능

5 주택조사

주거유형	조 사 내 용
임차가구	임대차계약, 실제 거주 여·부, 주택현황(유형, 시설, 상태 등) 등
자가가구	주택의 물리적 상태(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실제 거주 여·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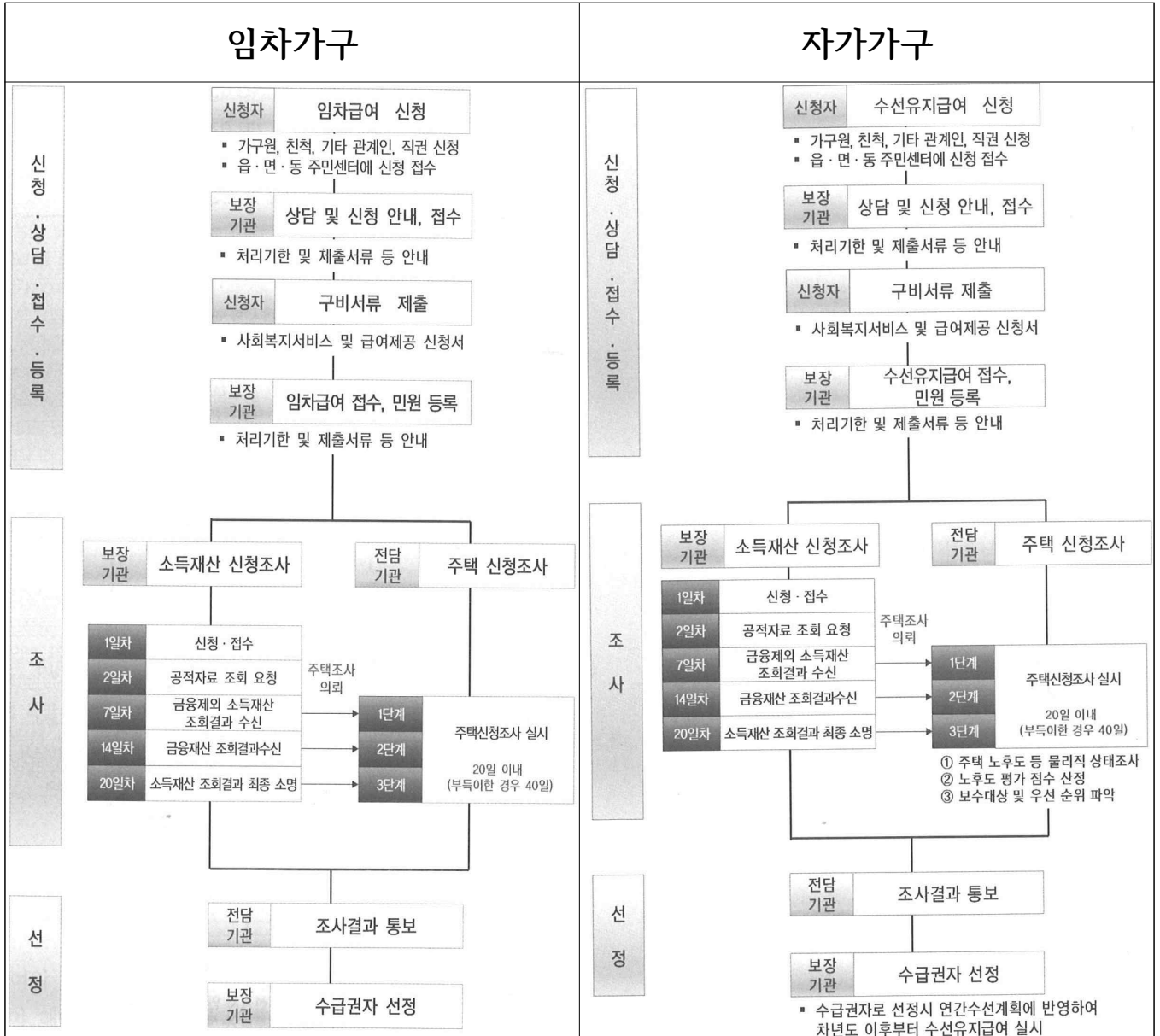
6 주거급여 자가진단(모의계산) 안내

- 마이홈포털 홈페이지 : <https://www.myhome.go.kr>

7 문의처

-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 ☎ 454 - 4242
- LH 주거급여 콜센터 ☎ 1600 - 0777

주거급여 업무 처리절차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안정과 자립도모

1 | 지원대상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19세~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
- 추가요건
 - ①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 (전입신고 필수)
 -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2 | 신청방법

-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3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읍면동 비치)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변경)서 (읍면동 비치)
- 신분증, 통장사본
-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 등) 사본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4 | 지원내용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적용
예시) 군산 거주 부모(2명) + 서울 거주 청년(1명)으로 구성된 3인가구
군산(3인) → 부모(군산 2인), 청년(서울 1인)으로 분리지급

가구수	지원상한액(원/월)				산정방식
	1급시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	4급지 (그외)	
1인	369,000	300,000	247,000	21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가구급여액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비율×30% · 청년가구 급여액 =청년가구 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생계급여기준액) ×청년가구원수비율×30%)
2인	414,000	335,000	275,000	238,000	
3인	492,000	401,000	327,000	283,000	
4인	571,000	463,000	381,000	329,000	
5인	591,000	479,000	394,000	340,000	
6인	699,000	568,000	463,000	402,000	

5 | 문의처

-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 ☎ 454 - 4242
- LH 주거급여 콜센터 ☎ 1600 - 0777

청년월세 지원 사업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거 비용 부담 완화 및 주거 여건 개선

1 | 지원대상

- 「청년기본법」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또는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미고려
 -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2 | 선정기준

-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고려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비고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가액	153백만원 이하	419백만원 이하	

3 | 신청방법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4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생애 1회)

5 |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읍면동 비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6 | 문의처

- 주택행정과 주택행정계 ☎ 454 - 4244

희망루아파트 입주 지원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반값 임대주택 공급으로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임대 아파트 주거환경 조성**

1 | 지원대상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입주자격 조사 범위

세대 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분리 되어 있는 배우자도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경우

2 | 신청방법

- 희망루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주대기자 신청서 제출

3 | 신청서류

- 입주대기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 관련서류, 소득·재산 확인 서류 등

4 |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1인 90%, 2인 80%이하)

소득기준(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가구	5인 가구
2025년(100%)	3,598,164	5,477,003	7,626,973	8,578,088	9,031,048
영구국민 임대	(90%)3,238,348	(80%)4,381,602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4]		

○ 자산기준

구분	총 자산	자동차
영구임대주택	245백만원 이하	4,542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	345백만원 이하	

○ 순위결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적용

5 임대조건

형 별	세대수	임대보증금	임대료	주택구분	비 고
합계	483				
24형 (11평)	148	1,858,000	36,990	영구임대(148세대) 수급자	
		7,135,150	59,460	영구임대(148세대) 일반인	
38형 (16평)	110	13,362,000	97,980	국민임대 (335세대)	1인세대도 입주가능
46형 (20평)	110	17,816,000	115,800		
58형 (25평)	115	25,833,200	142,520		

※ 임대료는 연 5%이하 인상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주택행정과 주택행정계 ☎ 454 - 3709
- 희망루아파트 관리사무소 ☎ 462 - 1642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

주거가 불안한 저소득가구의 장기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하여 주거 안정 도모(용자)

*사업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

1 지원대상

-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LH, 시장이 건립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확정된 자
- ※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 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2 신청기간

- 연 중

3 신청방법

- 군산시청 주택행정과(2층) 방문 신청

4 신청서류

- 입주계약서 원본, 수급자증명서, 인감증명서 3부, 인감도장, 신분증.
- 신청서, 의무이행 약속서,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주택행정과 비치)

5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호당 700만원 이내 무이자 지원 (계약금 본인부담)
- 지원기간 : 1회 2년(2회 연장으로 최대 6년까지 지원)
 - ※ 최근 2년 이내 2개월 이상 임대료, 관리비 체납자 연장 불가
 - ※ 1년 단위로 지원대상 자격 유지여부 확인 및 자격 중지가구 보증금 회수

6 문의처

-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 ☎ 454 - 4244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

저소득층의 노후·불량주택을 그린 리모델링, 방범시설 설치, 개·보수 지원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1 | 지원대상

- 노후·불량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주민

2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 동의서, 청렴이행서약서, 주택 소유자 동의서 등

4 | 선정기준

- 사업 지원 희망자 중 우선순위 추천에 의거 선정
 - 1순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임차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중 한번도 지원받지 않은 세대
 - 2순위 : 1순위를 제외한 가구
 - 3순위 : 재난, 재해, 화재 등 긴급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 선정 제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자가가구 제외(수선유지급여 지원)
 - 유사사업 지원(예정)가구 또는 3년 이내 집수리 사업 시행 가구

5 | 지원내용

- 가구당 지원금액 : 600만원 이내
- 지원내용 : 건축허가(신고)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없는 개량·보수공사

** 개보수 주요 내용

그린 리모델링 (수장,난방)	단열 벽체, 고효율 창호·보일러, 고효율 조명(LED), 일사조절장치 등 에너지절감 시설 설치 및 난방배관 교체 보수, 차단콘센트 설치 등
유니버설 디자인	문턱 제거 및 이에 따른 장판 보수, 미끄럼 방지 타일, 높낮이 조절 세면대, 안전용 손잡이, 자동중문, 가스안전타이머, 비상벨 설치 등
방법안전시설	방법창, 방법용 창살, 방법안전필름, 방법방충망, 창호용 잠금장치, 경보기, 소화기, 화재경보기, 위험감지 스마트 장비 설치 등
위생설비	화장실, 주방 개보수, 배관자재 등 교체 등
기 타	지붕(건축면적 100㎡이하) 교체, 접근로 포장 및 난간설치, 축대 및 담장보수,타일공사, 방수공사 등 시설보수 등
난방방식 변경	일산화탄소 중독 및 화재 노출 위험이 있는 연탄난방 사용가구에 대해 친환경·고효율 난방방식 전환
환기시스템 개선	실내 공기 질을 향상시키는 환기장치나 공기청정기 설치

6 | 문의처

-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 ☎ 454 - 4245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저소득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로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공간 확보 및 생활 편의 증진

1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2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 신청서류

- 신청서, 주택 소유자 동의서 등

4 | 선정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국가데이터처 발표 ('26.2.26) 기준>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6년	3,813,363	5,866,270	8,168,429	8,802,202	9,326,985

- 소득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경합 발생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1.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
2. 가구원 중 위의 항목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3.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가구

4.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등
5. 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6. 동일 순위 내 소득이 적은 장애인

- 선정제외 :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을 최근 3년 이내에 받은 경우. 다만, 장애인의 편의시설 안전장치 설치 등의 개조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5 | 지원내용

- 가구당 지원금액 : 380만원 이내
- 주택 내의 편의시설 지원을 원칙으로 장애종류 및 등급, 주택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

6 | 문의처

-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 ☎ 454 - 4245

저소득층 이사비 지원사업

경제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이사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정의
이사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

*사업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만65세이상) 및 심한 장애를 가진 독거장애인
 - ※ 신청 제외 대상
 - 자녀와 동거하는 사용대차 별도 가구 특례 대상자
 - 주민등록상 동일거주지 내 자녀와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는 세대

2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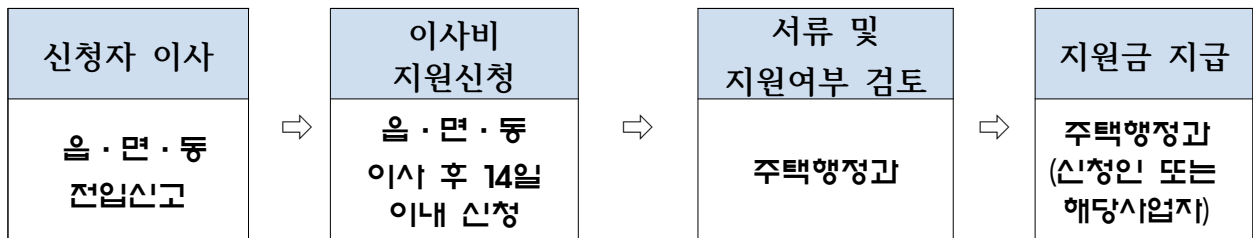
- 전입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사 후 14일 이내 신청)

3 신청서류

- 이사비 지원 신청서
- 이사비 견적서, 현금영수증/카드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중 택1(간이영수증 불인정)
- 신분증, 통장사본
- 주민등록 등·초본

4 지원내용

- 가구당 이사비 50만원 이내 지원



5 문의처

-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 ☎ 454 - 4244

주거취약계층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정상 거처 이전 지원으로
주거 상향 유도 및 주거비 부담 완화

*사업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

1 | 지원대상

-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에서 공공임대(민간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HUG 보증금 5천만원 무이자 대출 상품을 활용한 민간임대 이주자

2 |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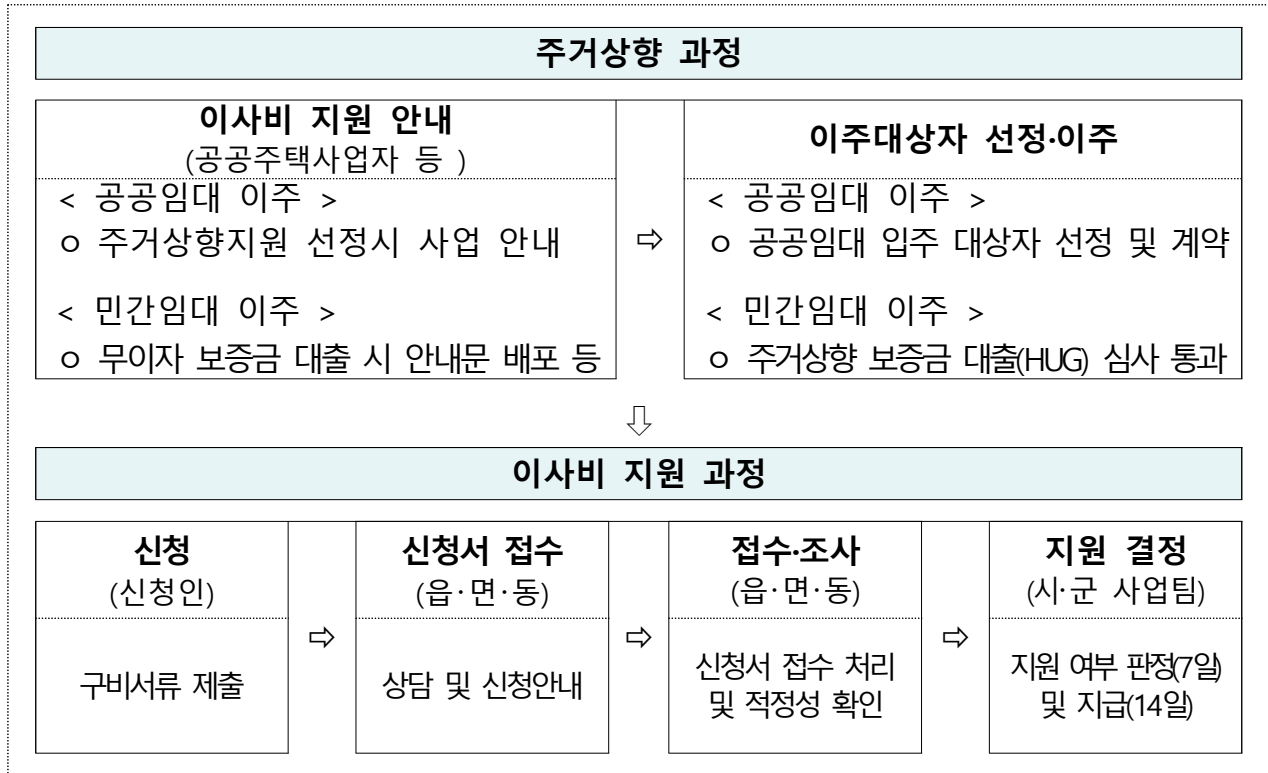
- 대상자가 입주하는 공공 민간주택이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방문 신청
(전입일 기준 3개월 내)

3 | 신청서류

- 필수제출서류
 - 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공공임대: 임대차 계약서,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공공주택사업자 발급)
민간임대: 무이자 보증금 대출거래약정서(기금 수탁은행 발급)
 -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후), 본인명의 통장사본
- 증빙서류
 - (이사비)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이사·용달 업체 명시,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간이영수증 불인정)
 - (생필품) 현금영수증, 카드전표(구매품목 명시, 필요시 추가 증빙 제출, 술·담배·의류·진료비·사치품·식사비 등을 제외, 간이영수증 불인정)

4 | 지원내용

- 가구당 이사비 40만원 이내 지원



5 | 문의처

-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 ☎ 454 - 4244

농촌주택개량사업

노후주택 개량과 신규 건축 수요에 대응하여 농촌 주거환경 개선
귀농·귀촌 등 농촌 이주 지원으로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

1 |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의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농어민, 귀촌자 등

2 | 신청기간

- 연초(추가 사업량 신청 - 연중)

3 | 신청방법

- 사업시행 공고 참고

4 | 신청서류

-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미과세증명서

5 | 선정기준

- 대상지역
 - 읍·면지역 : 모든 지역
 - 동 지역 :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용자대상
 - 농어촌지역의 본인 소유의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고자 하는 세대주

- 농어촌지역의 노후주택을 리모델링(증축 및 대수선)하고자 하는 세대주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의 세대주
-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용자 신청일 이전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 후 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세대주 등
- 대상주택 :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 이하의 단독주택
 - 다세대, 다가구, 근린생활시설, 민박 등 숙박시설은 대상 제외
 - 식당, 민박 등 용도 변경 시 용자금 회수
 - 2년 안에 소유권 변경 시 용자금 및 취득세 회수

6 | 지원내용

- 용자지원
 - 용자기관 : 단위농협
 - 대출금액 : 농협의 여신 규정에 따른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
 - 대출금리 : 고정금리(2%)와 변동 금리 중 선택(추후 변경 불가)
 -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 세금 감면 : 취득세 감면

7 | 문의처

-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 ☎ 454 - 4245

재난대비 긴급 주거시설 운영

재난으로 주거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안전한 임시 거주 공간을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과 주택 보수기간 거주지 지원

1 | 지원대상

- 화재 및 침수 등 재난 발생으로 주거 위기에 처한 군산 시민

2 | 신청기간

- 연중(긴급 위기상황 발생시)

3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4 | 신청서류

- 신청서, 입주 시 준수사항 등

5 | 입주기준

- 대상세대 발생 시 신청 순으로 입주

6 | 지원내용

- 가구, 생활용품 등 집기 일체가 완비된 주택에 즉시 입주하여
2개월 임시 거주(부득이한 사유 시 1개월 연장 가능)
-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도시가스 요금 등 본인 부담 없음

7 | 문의처

-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 ☎ 454 - 4244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귀농·귀촌인 등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 인구 유입 등 주거안정 도모

1 | 지원대상

- 도시·농어촌지역 1년 이상 빈집 및 공가

2 | 신청기간

- 사업 시행 공고 참조

3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4 | 신청서류

- 사업 신청서, 건축물 소유 증빙서류 등

5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동당 최대 2,500만원
- 지원내용
 - 주거시설개선 : 빈집 리모델링하여 주거공간 조성
 - 주민공간조성 : 빈집 철거 후 주민공용공간(주차장, 텃밭 등) 조성
- 지원조건 : 4년 동안 무상임대 제공 또는 공공용지 사용 동의
- 입주대상 : 주거취약계층, 외국인근로자, 장애인, 농촌 유학생 등

6 | 문의처

- 주택행정과 공동주택지원계 ☎ 454 - 4763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단열, 창호공사 등 에너지 사용 환경개선을 통해 저소득층의 에너지 빈곤 해소 및 주거안정 도모

1 |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임차) 및 차상위계층(자가, 임차)
- 기초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가구
 - ※ 주택소유주가 공공(지자체, 도시공사)인 공공임대주택 거주 대상가구 지원불가

2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 신청서류

- 신청서,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 소유자 동의서 등

4 | 지원내용

- 효율개선 시공 및 보일러 지원
 - 효율이 떨어지는 벽체, 창호, 보일러를 대상으로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 효율 시공 지원
- 폭염 대비 효율적 냉방 지원
 - 벽걸이에어컨 설치

5 | 문의처

-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 ☎ 454 - 4245

빈집 정비사업

방치 된 빈집 정비를 통하여 붕괴 및 안전사고 예방과 주변경관을 개선하여 시민 친화 도시 조성

1 | 지원대상

- 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빈집 및 건축물*
※ 농어촌지역의 경우 건축물인 창고, 축사 등 비주거용 빈집도 포함

2 | 신청기간

- 사업 시행 공고 참조

3 | 신청방법

- 빈집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4 | 신청서류

- 사업 신청서, 건축물 소유증빙서류(건축물 등기, 건축물대장 등)

5 | 지원내용

- 사업내용 : 방치된 빈집 철거비 지원
 - 일반건물 : 호당 300만원 이내 철거비 지원
 - 슬레이트 : 호당 400만원 이내 철거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 추가지원 : 도서지역(육로불가) 150만원, 해체신고비용 50만원

6 | 문의처

- 주택행정과 공동주택지원계 ☎ 454 - 4764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 마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용자)

*사업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

1 | 지원대상

- 군산시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예정)중인 무주택 신혼부부 및 미혼청년
- * '26.1.1기준,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만18~39세 미혼청년

2 | 신청기간

- 사업시행 공고 참고(사업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3 | 신청방법

- 군산시청 주택행정과 방문신청(공급주체와 임대차계약체결 후)

4 | 신청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임대차계약서(원본) 1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부, 주민등록등초본 1부, 미과세증명서(전국,주택) 1부, 신분증(기존입주자) 통장사본, 계약사실확인원, 권리침해유무확인서 추가 제출(주택행정과 비치) 신청서, 의무이행 약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

5 | 지원내용

- 계약금제외 임대보증금 내 (청년)3천만원, (신혼부부)4천만원, (신혼부부 1자녀이상) 5천만원 무이자 용자
 - ▶ 지원기간은 2년, 1회이며 자녀수에 따라 최대 4회 연장 가능
 - ▶ 임대주택 퇴거 시 상환

6 | 문의처

-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 ☎ 454 - 4245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혼부부의 주거마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1 | 지원대상

-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및 부부 모두 군산시 주민등록
 - 신청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주택구입) 및 무주택(전세)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에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자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2026년 2인가구 연 9,070만원
 -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2 | 신청기간

- 사업시행 공고 참고

3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4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지원서약서 동의서, 대출증빙서류, 전세계약서, 신분증, 지급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5 |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최대 2% 이자 지원(연 최대 3백만원)
 - ※ 본인부담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본인부담금리 적용
 - ※ 지원기간 : 3년(36개월)간 신청 가능 * 1자녀 4년, 2자녀 이상 5년

6 | 문의처

-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 ☎ 454 - 424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

1 | 지원대상

-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 청년 : 신청일 기준 만18~39세
- **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2 | 신청기간

- 연중

3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4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서약서,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5 | 지원내용

- 기 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보증시작일 2025. 3. 30 이전 최대 30만원

6 | 문의처

-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 ☎ 454 - 4242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사업

자력보수가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보수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1 | 지원대상

- 경과연수 15년 이상된 비의무 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 단,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60㎡(250세대 미만인 경우 85㎡)이하 세대가 전체 세대의 50% 이상인 단지는 해당(임대주택 제외)

2 | 신청기간

- 사업시행 공고 참고

3 |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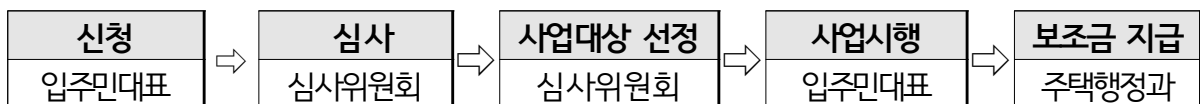
- 공동주택 입주인 대표가 시청 주택행정과 방문 신청

4 | 신청서류

- 신청서, 의결서 및 동의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내역서 등

5 | 지원내용

- 노후 공동주택 공용부분 개보수비 지원
 - ▶ 보수범위 : 내외부 도장, 외벽 및 옥상 방수, 단지 내 도로포장 등
 - ▶ 지원금액 : 군산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단지규모별 지원기준 별도)
- 선정기준 : 신청단지 중 군산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 대상 선정
- 지원 절차



6 | 문의처

- 주택행정과 공동주택지원계 ☎ 454 - 4762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동주택 입주민 간 소통화합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는 성숙한 공동체 문화 조성

1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동아리 등 자생단체, 입주자 대표회의

2 | 신청기간

- 사업시행 공고 참고

3 | 신청방법

- 시청 주택행정과 방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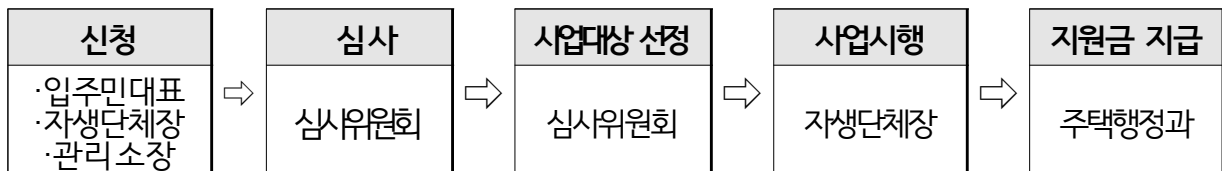
4 | 신청서류

- 신청서, 의결서 및 동의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내역서 등

5 | 지원내용

- 공동체 활성화 관련 사업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 프로그램 운영지원 : 단지 당 2백만원 이하, 자부담율 30% 이상
 - ▶ 시설보수 비용지원 : 단지 당 8백만원 이하, 자부담율 30% 이상
- 선정기준 : 신청단지 중 군산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 대상 선정

- 지원 절차



6 | 문의처

- 주택행정과 공동주택지원계 ☎ 454 - 4763

II. 군산시[기타부서]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 가구의 난방시설에 대한 무상 점검 및 수리를 통해 주거복지 향상 및 에너지효율 제고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군산시 관내 취약계층
신청기간	매년 4 ~ 5월 중
신청방법	읍·면·동 수요조사 시 신청
신청서류	없음
선정기준	취약계층 가구 중 예산범위 내 선정
지원내용	<p>□ 취약계층* 가구의 난방시설(보일러) 점검 및 배관 청소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관제, 보온재, 내열실리콘 등 배관 청소 및 소모품 교체 - 지원내용 : 가구당 66,500원 정도(점검 20,000원, 부품교체 46,500원) <p>* 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약자,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가구, 부자·모자세대, 만성희귀질환세대 등 사회적 소외계층</p> <p>*25년 홈닥터 지원 대상 가구는 제외</p>
문의처	신재생에너지과 에너지관리계 ☎454-2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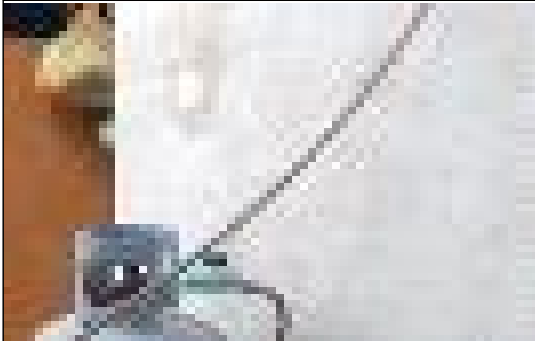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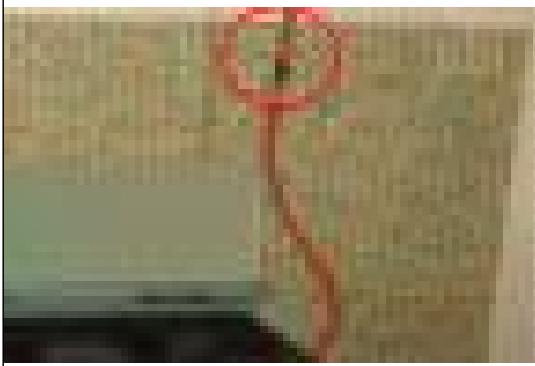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사회적 취약계층의 가스연소기 사용시 과열로 인한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한 가스안전장치 보급으로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구현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소외계층* *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신청기간	매년 1월 ~ 2월중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신청서류	구비서류 없음
선정기준	읍·면·동 수요조사 시 신청
지원내용	<p>□ 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 타이머콕(가스연소기 안전장치) 설치 ○ 시 행 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p>□ 개선사례</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개 선 전</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개 선 후</p>  </div> </div>
문의처	신재생에너지과 에너지관리계 ☎454-2715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등 시설개선을 지원하여 가스안전 확보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LPG용기를 사용하는 단층 주택 - 용기보관 부지 확보가 어려운 다세대주택의 경우 사업이 제한됨
신청기간	매년 1월 ~ 2월중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신청서류	구비서류 없음
선정기준	읍·면·동 수요조사 시 신청
지원내용	<p>□ 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PG호스 금속배관 교체 및 퓨즈콕 설치 등 ○ 시 행 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p>□ 개선사례</p> <div style="text-align: center;"> <p>개 선 전</p>  <p>개 선 후</p>  </div>
문의처	신재생에너지과 에너지관리계 ☎454-2715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재정 지원으로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전기료 절감 등 시민 모두가 누리는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단독주택 소유주 또는 예비 소유주
신청기간	지방보조금 신청 공고에서 정한 기간
신청절차	<p>① 사업희망자가 시공기업 선정 및 계약체결 후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https://nr.energy.or.kr/A0/GN00/GN0000010.cb)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 및 접수 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참고</p> <p>②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사업선정 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를 설치</p> <p>③ 신재생에너지 설치 완료 후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시청 담당부서에 지방보조금(도비.시비) 교부 신청</p>
신청서류	보조금 신청서, 설치완료 확인서(한국에너지공단), 한전 사용전 점검필증, 준공 사진(전체 설치장면), 하자보증서 사본, 통장사본
접수방법	등기우편접수
추진절차	<pre> graph LR A[신청자 참여시공기업선택 (그린홈홈페이지)] --> B[신청자/ 시공기업 계약체결 및 신청서류작성] B --> C[신청자 신청서류접수 (그린홈홈페이지)] C --> D[군산시 지방보조금 신청공고] D --> E[군산시 한국에너지공단 서류검토 및 신청자사업선정] E --> F[신청자/ 시공기업 자부담금납부/ 사업착수 및 설치확인신청] F --> G[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설비설치확인 및 보조금(국비)지급] G --> H[군산시 지방보조금 지급] </pre>
지원내용	<p>○ 설치비용 일부 지원 : 사업시행 년도마다 지원내용과 지원액 공고</p> <p>- 지방보조금(도비.시비) : 예산액의 범위내에서 지원</p>
문의처	신재생에너지과 에너지개발계 ☎454-4425

취약계층 LED보급사업(저소득층)

저소득층 가구의 노후 일반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전력효율 향상 제고 및 에너지복지 구현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군산시 관내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차상위계층
신청기간	매년 1 ~ 3월중
신청방법	읍면동 수요조사 시 유선 또는 방문 신청
신청서류	없음
선정기준	취약계층 가구 중 예산범위 내 선정
지원내용	<p>□ 저소득층 가구의 노후 일반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일반조명</p>  </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고효율 LED조명</p>  </div> </div>
문의처	신재생에너지과 에너지개발계 ☎454-4424

노인맞춤형 주거관리서비스

노인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지원(정리정돈, 청소, 방역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가구의 만65세 이상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신청기간	반기별(2월, 7월) 집중모집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	신청서외 별도 구비서류 없음 (우선순위 : 통합돌봄 사례관리대상자, 면단위 거주 독거노인)																					
선정기준	예산범위 내 대기자 우선순위																					
지원내용	<p>□ 서비스 내용 : 월4회, 주1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가구의 욕구에 따라 주거관리, 실내외 정리정돈(청소), 방역서비스 제공 ○ 월 1회 개별 상담서비스 제공(사례관리) - 부가서비스 제공 및 타사업의 주거복지 사업 연계서비스 제공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d9e1f2;">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서비스 내용</th> <th style="text-align: center;">서비스 횟수</th> <th style="text-align: center;">회당 시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본 서비스</td> <td> 1. 주거관리 서비스 - 전기, 가스, 수도, 누수, 소모품 등 간단한 수리.교체 - 창문, 창틀, 문 등 시설점검 및 간단한 수리 2. 실내외 환경 정리.정돈(청소) 서비스 - 실내외 수납 정리 및 청소 3. 실내외 방역 서비스 </td> <td style="text-align: center;">주 1회 월 4회</td> <td style="text-align: center;">60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부가 서비스</td> <td> 주거복지 사업연계(상담) 주거상태 체크리스트 작성 </td> <td style="text-align: center;">필요시 분기별1회</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p>□ 서비스 가격 : 1등급(원거리)월180,000원, 2등급(기본)월160,000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d9e1f2;">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정부지원금</th> <th style="text-align: center;">본인부담금</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등급(원거리)</td> <td style="text-align: center;">164,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6,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등급(기본)</td> <td style="text-align: center;">144,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6,000원</td> </tr> </tbody> </table> <p>□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 서비스 제공기관 : 마을활력소이음협동조합, 소통하는복지센터</p>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본 서비스	1. 주거관리 서비스 - 전기, 가스, 수도, 누수, 소모품 등 간단한 수리.교체 - 창문, 창틀, 문 등 시설점검 및 간단한 수리 2. 실내외 환경 정리.정돈(청소) 서비스 - 실내외 수납 정리 및 청소 3. 실내외 방역 서비스	주 1회 월 4회	60분	부가 서비스	주거복지 사업연계(상담) 주거상태 체크리스트 작성	필요시 분기별1회	-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원거리)	164,000원	16,000원	2등급(기본)	144,000원	16,000원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본 서비스	1. 주거관리 서비스 - 전기, 가스, 수도, 누수, 소모품 등 간단한 수리.교체 - 창문, 창틀, 문 등 시설점검 및 간단한 수리 2. 실내외 환경 정리.정돈(청소) 서비스 - 실내외 수납 정리 및 청소 3. 실내외 방역 서비스	주 1회 월 4회	60분																			
부가 서비스	주거복지 사업연계(상담) 주거상태 체크리스트 작성	필요시 분기별1회	-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원거리)	164,000원	16,000원																				
2등급(기본)	144,000원	16,000원																				
문의처	경로장애인과 사회서비스계 ☎454-3122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 개량 지원으로 석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및 거주자				
신청기간	매년 1~2월(이후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접수)				
사업기간	매년 3~12월(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방법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팩스 등)				
신청서류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신청인 및 건축주 신분증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인 경우) 사본 1부 등				
선정기준	연령, 소득수준, 건축물 노후정도, 건축물 면적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처리비 지원				
	- 지붕개량(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우선 지원)				
	○ 지원금액				
		구 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비 고
		주택	우선지원가구	1동당 전액 지원	
		일반가구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		
	비주택 (창고·축사,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우선지원가구	1동당 200㎡이하 지원		
		일반가구			
	주택 지붕개량	우선지원가구	1동당 1천만원 한도 지원		
		일반가구	1동당 최대 500만원 지원		
	○ 지원 우선순위				
	- 기초수급 → 차상위 → 취약계층(중위소득 이하, 장애인, 독거노인 등) → 타사업 연계대상 → 일반가구 중 노후도가 심한 주택 등				
	○ 처리 절차				
	신청서 접수 읍면동	⇒	현지 실태 및 면적조사 위탁사	⇒	결과 안내 및 슬레이트 철거처리 공사업자
문의처	자원순환과 청소지도계 ☎454-3474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서비스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저렴한 보험료로 국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

구 분	내 용				
신청대상	주택(동산, 세입자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신청기간	연중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직접 방문				
신청서류	가입신청서 (신청장소 비치), 체크리스트				
가입절차	읍면동사무소 신청서 접수·확인 ⇒ 보험회사 심사 후 계약 확정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보상 : 기둥, 벽체, 지붕 등 파손 및 침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 (비닐하우스 포함) : 골조피해, 비닐파손 (특약가입시) □ 보험기간 : 1년 원칙 (갱신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 보험료 예시 				
	가입 구분(예시)		'26년 보험료(원)		비고 (기준) · 단독주택(80㎡) · 가입금액 - 소유자: 80백만원 - 세입자: 12백만원
	일반 (소유자)	총액	36,900		
		정부지원	20,300		
		자부담	16,600		
	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세입자)	총액	20,400		
		정부지원	17,800		
		자부담	2,600		
	경제취약계층 전부지원 (세입자)	총액	20,400		
		정부지원	20,400		
자부담		0			
○ 지원규모 : 가입대상별 지원비율					
		기본지원율	추가지원율	자부담	
주택	일반	55%	60%	12~30%	
	차상위	77.5%	40%	-	
	수급자	86.5%	-	-	
	재해취약지역	87.04%	-	13%	
온실		70%	20%	24%	
소상공인		70%	10%	30%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자부담 없이 무료 가입 가능					
□ 기대효과					
○ 보험가입자들에게 풍수해로 인한 피해 시 실질적인 보상 가능					
▶ 피해복구지원제도에 의한 지원금보다 많은 금액 수혜 가능					
	구 분	주택전과	반 과	침 수	비 고
	재난지원금	2650만원	1350만원	350만원	
	풍수해보험	8000만원	4000만원	1070만원	주택면적 80㎡기준
※ 2021년도 부터 재해취약지역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확대					
※ 소상공인 가입자 대상 다양한 우대 혜택 제공					
문의처	안전총괄과 자연재난계 ☎454-3865				

귀어창업 및 주택지원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비즈니스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

1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 만 65세 이하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
- 군산시청 공고문 참조(상반기, 하반기)
- 군산시청 어업정책과 제출

2 신청서류/ 선정기준

- 신청서류 : 귀어귀촌인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귀어업인 수산업 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신용조사서 1부(수협은행 발급),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선정기준 : 사업대상자 선정 시 1순위 귀어인, 2순위 후계어업경영인

3 지원내용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창업자금

< 수산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 어촌비즈니스 등) 창업자금 >

- 양식장·가공공장 신축부지 구입(대출집행 금액의 50% 이내)
- 어선(허가어선은 1척에 한함)·양식장·가공공장·염전구입비 등

< 어촌비즈니스 분야(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창업자금 >

- 어촌체험 및 해양수산레저 체험시설 건축·구입·리모델링 비용

○ 주택마련(매입, 신축, 리모델링 등) 지원

- 대상지역 : 읍·면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상주택 :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m² 이하

- 재촌비어업인 불가

□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지원형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용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를 지원

○ (재원) 금융자금 100% (이자보전사업 : 수협은행)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4 문의처

○ 어업정책과 어업정책계 (☎ 063-454-4722)

군산 STAY 취·창업자 주거지원사업

LH와 연계하여 창업자 및 관내 취업자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거비 부담경감 및 창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1 | 지원대상

- 만19~4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직원
- 타시군에 주소를 두고 군산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 타지역에서 관내 기업에 3년 이내에 취업한 청년

2 | 신청방법

- 신청기간내 기업지원과 방문 접수

3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고용보험가입 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지원 유형에 해당하는 증명 서류 (공고문 참고)

4 | 선정기준

- 서류 심사 : 신청자격 검토, 가점사항 검토 및 부여
- 면접심사 : 창업자 보유역량, 창업 아이템 기술성, 창업아이템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심사
- 대상자검증 : 무주택, 소득검증(LH공사)
- 최종 선정 : 서류심사, 면접심사 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LH공사의 대상자 검증에 통과하면 결정

5 | 지원내용

- LH 보유 원룸 임대보증금 및 월임차료 지원
- 입주일로부터 2년간(최대 24개월)

구분	임차보증금	월임차료
최대 지원금액	3,500천원	100천원

- 1) 임차보증금 지원 보조금은 임차기간 만료 후 반환
 - 2) 임차보증금 외 계약금 1,000천원 본인 부담
※ 단 임차보증금 4,500천원, 월임차료 100천원 초과시 본인 부담금 초과 발생 가능
 - 3) 월임차료 외 제반 관리비용 본인 부담
 - 4) 임차보증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직접 지급
-

6 | 문의처

- 기업지원과 창업지원계 ☎ 454 - 4393

주거복지 유관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비고
군산시청 주택행정과	063-454-4242	군산시 시청로 17(2층)	
익산권 마이홈센터	063-840-0912	익산시 선화로3길 16-10 (금오빌딩 5층)	
찾아가는 마이홈센터	063-466-8267	군산시 문화로 36	
LH 콜센터	1600-1004		
LH 전세임대 콜센터	1670-0002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	1588-8114		
한국주택금융공사 전 북 지 사	063-249-2779 (전북지사)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29 kt빌딩 12층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연번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1	옥구읍행정복지센터	군산시 옥구읍 옥구로 6	454-7010	454-7009
2	옥산면행정복지센터	군산시 옥산면 신성로 200	454-7040	454-7039
3	회현면행정복지센터	군산시 회현면 회현로 181	454-7070	454-7069
4	임피면행정복지센터	군산시 임피면 남상2길 1	454-7100	454-7099
5	서수면행정복지센터	군산시 서수면 항쟁로 193	454-7130	454-7129
6	대야면행정복지센터	군산시 대야면 석화로 7	454-7160	454-7159
7	개정면행정복지센터	군산시 개정면 바르매길 42	454-7190	454-7189
8	성산면행정복지센터	군산시 성산면 송호로 222	454-7220	454-7219
9	나포면행정복지센터	군산시 나포면 나포초교길 9	454-7250	454-7249
10	옥도면행정복지센터	군산시 내항2길 125	454-7280	454-7279
11	옥서면행정복지센터	군산시 옥서면 옥구저수지로 209	454-7310	454-7309
12	해신동행정복지센터	군산시 중앙로 220	454-7340	454-7339
13	월명동행정복지센터	군산시 구영6길 51	454-7370	454-7369
14	삼학동행정복지센터	군산시 미원로 17	454-7400	454-7399
15	신평동행정복지센터	군산시 대학로 215	454-7430	454-7429
16	중앙동행정복지센터	군산시 큰샘길 47	454-7460	454-7459
17	흥남동행정복지센터	군산시 월명로 377	454-7490	454-7489
18	조촌동행정복지센터	군산시 부곡1길 40	454-7520	454-7519
19	경암동행정복지센터	군산시 경암3길 56	454-7550	454-7549
20	구암동행정복지센터	군산시 세풍길 21	454-7580	454-7579
21	개정동행정복지센터	군산시 번영로 339-5	454-7610	454-7609
22	수송동행정복지센터	군산시 동수송1길 7	454-7640	454-7639
23	나운1동행정복지센터	군산시 신설3길 3	454-7680	454-7679
24	나운2동행정복지센터	군산시 나운3길 16	454-7710	454-7709
25	나운3동행정복지센터	군산시 부곡1길 25	454-7750	454-7749
26	소룡동행정복지센터	군산시 설림안4길 30	454-7790	454-7789
27	미성동행정복지센터	군산시 미성문화길 4-5	454-7820	454-7819